

소 장

원 고 ***

피 고 주식회사 *****

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의 소

2016. 7.

원고 소송대리인

법무법인 한 백

담당변호사 이 진 화

춘천지방법원 *** 귀중**

소 장

원 고 *** (620308-*****)

*** *****)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백 담당변호사 이진화

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4 층(서초동, 양진빌딩)

전화 02-535-6903, 팩스 02-596-5550

피 고 주식회사 *****)

*** *****)

대표이사 ***

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등의 소

청 구 취 지

1. 피고의 별지1 기재 주주총회에서 행해진 ***, ***, ***을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.
2. 피고의 별지2 기재 주주총회에서 행해진 원고에 대한 이사해임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.
3. 피고의 별지3 기재 주주총회에서 행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 *** 선임결의는 각 부존재함을 확인한다.
4. 피고의 별지4 기재 신주발행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5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I. 당사자들의 관계 및 소 제기 경위

1. 피고 주식회사 *****(이하 ‘피고회사’라 합니다)은 부동산개발, 분양, 임대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2. 4. 27. 설립된 법인으로서, 전 대표이사는 ***, ***이고, 설립시 발행주식은 20,000주였으나, 2016. 3. 31. 경 400,000주로 그 발행주식 총수를 증가시킨 회사입니다.

-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
2. 원고는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. 2. 15. 경 위법하게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해임당한 자이자, 위 회사의 주식 10,200주(51%)도 보유하고 있는 자입니다.

3. 아래 상술하겠지만, 원고는 피고회사 및 그 전 대표이사들인 ***, ***와 수차례 소송을 겪으며 대부분의 소송에서 승소한 자로서, 그 소송결과 위 ***와 ***로부터 피고회사의 주식 10,200주(신주발행 전 51%의 지분임)를 이전받은 사실이 있으나, 피고회사 및 그 전 대표이사 ***, ***는 이를 무시하고 원고에게 전혀 어떠한 의결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선임, 이사해임, 정관변경 및 감사선

입을 자의적으로 행하고, 또한 그렇게 위법하게 선임된 이사들이 신주발행까지 하여 원고 주식을 희석시키고 그들의 경영권 유지행위를 계속하고 있기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.

- 갑 제2호증의1,2,3,4 각 주식양도결정문 및 항고결정문 등(***에 대하여 주식 8,000주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주식양도명령)
- 갑 제3호증의1,2,3,4,5 각 판결문 등 (전 대표이사 ***, ***가 각 3,000주씩 이전하라는 판결)

(위 결정과 판결에 따르면, 산술적으로 원고는 총 14,000주를 취득했어야 하나, 일부 중복되는 부분과, 주식처분 사실을 모르고 진행된 부분이 있어, 현재 10,200주만 취득한 상황인 바, 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술합니다)

이 사건의 이해를 위하여는 그 사건 배경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기에 간략히 그 경위를 기술하고 구체적으로 청구원인을 기재하겠습니다.

II. 이 사건의 기초적 배경사실

본 소송의 배경은 갑 제3호증의 1,2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, 자세한

내용은 위 내용으로 같음하고, 본 소송에서는 사건 이해측면에서 위 내용을 간략히만 기재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.

1.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 매입

원고는 2011. 5. 16. 중고차매매단지 조성목적으로 소외 ***, **로부터 *** ** 산 138-5 입야 10,378㎡, 같은 리 산 138-9 입야 734㎡, 같은 리 산 140 입야 12,190㎡(이하 '이 사건 부동산들'이라 함)를, 금 36억원에 매입하고 금 3.6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.

현재, 위 부동산들은 지번변경과 병합을 통하여 *** ** 251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.

- 갑 제4호증의1~4 각 부동산등기부등본

2. 소외 ***, **에게 계약당사자 지위양도와 금전대여

(1) 그 후 원고는 위 상태에서 2012. 1. 26. 위 매매계약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소외 ***, **에게 양도하였습니다.

그러면서, 원고가 기 지급한 계약금 3.6억원은 위 ***, **가 원고에게 지불하기

로 하였는데, 이 돈도 피고회사가 설립된 후인 2012. 9. 경에서야 지급했습니다.

(2) 그리고, 위 ***, ***는 원고에게 부족한 중도금 6억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 제비용을 부담하고 이자를 대납해주겠다는 부탁을 하여, 원고는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위 ***, ***가 지급할 이 사건 부동산들의 중도금 6억원을 대여해주었고, 그에 대하여 소외 ***는 금 6억원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.

그 후 원고가 위 ***에 대한 공증증서로 강제집행한 것 중 하나가, 갑 제2호증 주식양도결정으로서, 원고는 그 결정으로 소외 ***의 주식 8,000주를 이전받은 것입니다.

- 갑 제2호증의1,2 주식양도결정문(***)에 대하여 그 주식 8,000주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주식양도명령)

(3) 또한, 원고는 위 자들로부터 잔금대여의 부탁도 받고, 2012. 4. 27. 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(*** 행구동 1528-7 임야 11731m²)을 담보로 제공하고, *****협동조합에서 주식회사 *****을 주채무자로, ***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계약(15억원)의 물상보증(채권최고액 19.5억원)을 해주었습니다.

그리고, 당시 그러한 물상보증뎡가로 약정한 것이 주식 30%이전, 수수료조 금 2.5

역원의 지급이었고, 그 즈음 원고는 사내이사로까지 등기된 것입니다. 당시, 원고가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, 이사로 선임되며, 피고회사 주식 30%를 이전받은 것은 사업파트너로서 참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.

그런데, 소외 ***, ***는 이 사건 부동산들 매수대금 중 잔금용으로 원고의 물상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금(만기일 2015. 4. 27.) 15억원을 미상환하여, 그 물상보증 대상 부동산이 **** 2015타경3992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, 이에 원고는 부득이 대위변제하고 주식회사 *****과 ***를 상대로 한 **** 2016가합5029 변제자대위금 등 사건으로 최근 1심 승소한 상황입니다.

- 갑 제5호증 **** 2016가합5029 변제자대위금 판결문

3. 피고회사의 설립 및 그 후의 경과

(1) 소외 ***, ***는 2012. 4. 27.경 피고회사를 설립하고, 회사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. 그 등기도 중간생략등기로서 ***, ***는 등기부에 빠져있고, 피고회사가 직접 매수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.

(2) 그리고, 2년정도 후인 2014. 7. 23. 경 이 사건 부동산들에 복합상가인 소위 ‘아울렛’이라는 형태의 상가를 짓고, 외부회사인 주식회사 *****에 35억원에 임대를 주었습니다.

4. 원고와 피고회사, 소외 ***, ***와의 소송관계 및 원고의 주식취득

원고와 피고회사, 그 외 ***, ***는 몇 건의 소송을 치렀는데, 이는 모두 위와 같이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등을 원고로부터 빌렸으면서도 전혀 이를 변제할 생각을 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것인 바, 이를 요약하면,

(1) 먼저, 위 언급 원고 대여 중도금 6억원대여와 관련된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으로서, 그 소송에서 원고는 ***의 주식 8,000주를 이전받았습니다.

- 갑 제2호증의1,2 주식양도결정문(***에 대하여 그 주식 8,000주를 원고에게 이전하라는 주식양도명령)

(2) 다음으로, 위 언급 잔금 15억원의 물상보증에 대한 댓가로 주식 30%, 수수료 2.5억원의 약정에 관련된 소송으로서, 그 소송이 갑 제3호증의1,2 판결문인 바, 그 사건 1심에서는 원고가 전부 승소(2.5억원 승소, 30%주식취득)하였으나, 2심에서는 2.5억원 부분이 파기되어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, 최종적으로 원고는 주식 30%만 이전받았습니다(***, ***의 주식 각 3,000주씩)

- 갑 제3호증의1,2 각 판결문(전 대표이사 ***, ***가 각 3,000주씩 이전하라는 판결)

(3) 따라서,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하여, 원고는 총 14,000주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나, 주식수 산정 문제 등으로 현재 10,200주만 보유하고 있는 바,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상술하겠습니다.

(4) 그리고, 그 외에도 피고회사 전 대표이사 *** **의 배임 등의 문제로 회계장 부열람등사가처분, 주주대표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많은 분쟁이 있는 상황입니다(갑 제9호증 가처분결정문, 갑 제10호증 주주대표소송 사건내역서)

(5) 그 과정에서, 피고회사는 2016. 초 기존 이사 *** 외 이사 및 감사들을 새로 선임하였고, 기존 이사인 ***와 채권자는 이사회에서 해임되었으며, 아울러 2016. 3. 경 신주 38만주를 발행하여 현재 총 발행주식수가 40만주가 되었습니다.

5. 소결

이상과 같은 내용하에서,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.

Ⅲ. 원고의 청구원인 -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및 신주발행무효확인

1. 개요

(1)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각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은, 위 Ⅱ 기초사실 관계 4. 부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원고가 여러 차례의 소송을 통하여 피고회사의 주식 51%(10,200주)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한 원고에게는 소집통지조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음을 주된 위법사유로 하며,

(2) 각 신주발행무효는 위와 같이 51%를 보유한 원고가 제외된 채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을 하였음을 주된 위법사유로 삼고 있습니다.

(3) 따라서, 본 사건은 원고의 주식보유수량 및 원고를 무시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상의 하자의 위법정도가 주 쟁점이기에, 이에 대하여 사전 언급합니다.

2. 주식보유관계 및 주주총회,이사회결의의 하자과 관련된 기초설명

(1) 원고는 이미 귀원 2015카합5033 ‘장부 등 열람 및 등사가처분’을 통하여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가받았으나, 피고회사측에서 아직까지 주주명부를 공

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피고회사의 정확한 주주명부 및 주주구성을 알지 못합니다.

(2) 피고회사가 공개하고 있는 주주구성

다만, 법인등기부등본, 감사보고서, 종전 소송에서 도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보면, 회사측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주식수,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.

(가) 먼저, 갑 제1호증 회사법인등기부를 통해 2012. 4. 27. 회사설립시 발행주식 총수 20,000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.

(나) 다음으로, 갑 제3호증의 1,2 2013년경 시작된 ***** 2013가합2541 판결문(그 항소심 ***** 2014나2037314)을 보면 ***, *** 각 10,000주씩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, 최소한 소송이 시작된 2013년경 ***, *** 각 10,000주씩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〈갑 제3호증의 1,2 판결문 별지 중 발췌〉

목 록

- 1. 발행회사 : 주식회사 문막로즈아울렛
- 1. 주식의 종류 : 보통주
- 1. 권면액 : 1주당 금 5,000원
- 1. 주주명 : 김승호, 이근우
- 1. 발행주식의 총수 : 20,000주
- 1. 각 보유 주식수 : 김승호 10,000주, 이근우 10,000주, 권.

(다) 그런데, 2014. 8. 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주주명부(갑 제6호증 주주명부)와, 2014. 연말기준 감사보고서(갑 제7호증)를 보면, ***는 7,200주로 기재되어 있고, ***는 6,000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.

따라서, 2014. 8. 이전에 ***의 주식 중 2,800주와 ***의 주식 중 4,000주가 타인에게 이전된 것을 알 수 있는 바, 아래 2014회계년도 감사보고서 기재 주주구성을 본다면 *** 주식 2,800주는 ****에게, *** 주식 4,000주는 ***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.

<갑 제7호증 2014회계년도 감사보고서 중 발췌>

- 발췌 그림 생략

(라) 그리고, 다시 2015. 연말기준 감사보고서(갑 제8호증)를 보면, ***, ***의 주식은 그대로인데, ***, ***의 총 주식 10,000주가 ***과 ***에게 각 4,000주, 6,000주씩 이전는 것이 확인됩니다.

<갑 제8호증 2015회계년도 감사보고서 중 발췌>

- 발췌 그림 생략

(마) 그리고, 다시 갑 제1호증 최근 법인등기부를 보면, 2016. 3. 31. 경 유상증자

를 통하여 총 주식을 400,000주로 증가시킨 것이 확인됩니다.

(3) 법원 판결을 반영한 정확한 주주구성

그러나, 이러한 피고회사측의 주주변경 및 주주구성은 그 간 원고와의 소송에서 도출된 주식양도결정, 주식양도판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만든 것인 바, 그 간 판결을 반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(가) 먼저, 원고는 ①소외 ***를 상대로 **** 2014타채1249호 주식양도명령으로 위 ***의 주식 중 8,000주를 양도받았으며, 이 결정은 2014. 10. 15. 확정되었고, 피고회사에는 2014. 8. 15. 이미 송달되었으며(항고 각하되어 1심결정이 최종 결정입니다), ②또한, 소외 ***, 소외 ***, 피고회사를 상대로 한 **** 2013가합2541 판결문(그 항소심 ***** 2014나2037314)을 통해 위 ***와 ***로부터 각 3,000주씩의 주식을 이전받았으며, 그 소송은 위 *** 등이 상고하지 않아 2015. 5. 26. 확정되었습니다(단, 원고가 2.5억원 패소부분을 상고하여 패소부분에 대한 최종확정일은 2015. 9. 18.입니다)

- 갑 제2호증의1~4 주식양도결정관련 결정문 및 송달,확정증명원
- 갑 제3호증의1~5 주식양도판결관련 판결문 및 송달,확정증명원

(나) 그리고, 피고회사의 주식은 회사 성립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주권이 미발행된 회사의 주식이라 민법상 지명채권양도방법에 따라 이전되므로, 위 판결문의 내용을 반영하면,

①2014. 10. 15. 이미 원고는 위 주식양도명령에 따라 당시 ***가 보유한 7,200주를 이전받았고 그 결정은 2014. 8. 18. 피고회사에 송달되었으며, 따라서 그 이후 ***의 주식을 이전받은 ***, ***에게 대항이 가능하고,

(위 주식양도결정에서는 8,000주의 양도가 결정되었으나, 위 언급과 같이 당시 ***가 7,200주만 보유하였기에 7,200주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)

②2015. 5. 26. 원고는 다시 ***로부터 3,000주를 이전받았고, 그 판결문 또한 이미 2015. 5. 12. 피고회사에 송달되었기에,

(위 주식양도판결에서는 ***에게도 3,000주 이전을 명하였으나, 위와 같이 주식 양도결정을 이미 받아 ***는 주식이 없는 상황이라 집행불능이 되므로, ***의 3,000주만 이전받게 됩니다)

③따라서, 이미 원고는 2015. 5. 26. 부터 피고회사 총 주식 20,000주 중, 10,200주 (51%)를 보유한 주주이고, 비록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미 소송대상자

로서 원고에게 주식이전판결과 명령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는 피고회사가 계속 명의 개서를 부당거절하여 못한 것일 뿐이므로, 아래 판례에 의하면 명의개서없이도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라 할 것입니다 (소갑 제8호증 2015회계년도 감사보고서의 주주기재, 그리고 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이사선임 및 이사해임 등의 내용을 보면, 피고회사는 원고를 전혀 주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)

[대법원 92다40952]

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.

(4) 소결

따라서, 위와 같이 원고는 2015. 5. 26.부터 피고회사 주식 20,000주 중 10,200주를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, 그 이후 개최된 이 사건 별지 1~3기재 주주총회는 이러한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도 없고, 의결권도 부여되지 않은 채 개최되었기에, 본 건에서 그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다투고, 그러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

이사들이 결정한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하는 것인 바, 이하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.

3. **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- 별지 1~3기재 각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사선임결의(별지1), 이사해임결의(별지2),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(별지3)의 부존재 확인**

현재 원고는 피고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고,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 없어,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언제 개최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여, 갑 제1호증 원고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나타나는 내용을 통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추정하여, 그 부존재를 구하는 안건을 특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(1) 먼저,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,

- 2016. 1. 19.자 각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1. 20. 각 로 등기된 ***, ***, ***의 기재가 있어, 그 즈음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고(별지1기재 주주총회)

- 2016. 2. 15.자 해임 및 2. 19.자 등기로 원고의 이사해임기재가 있어, 그 즈음 원고의 이사해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(별지2기재 주주총회)

- 2016. 3. 30.자 변경 4. 5.자 등기의 내용으로 ①발행주식총수를 80,000주에서 1,600,000주로 변경하는 기재가 있고, ②***에 대한 감사기재가 있어, 그 즈음 정관

변경 및 감사선임을 위한 주주총회가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(별지3기재 주주총회)

(2) 그런데, 위와 같이 원고는 이미 2015. 5. 26.부터 10,200주(51%)를 가진 주주로서 이사, 감사선임여부 및 정관변경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주식을 가진 주주였는데,

①위 2016. 1. 19.경, 2. 15경, 3. 30.경의 각 주주총회 개최시 51%로의 주식보유자로서 결의안건의 가부를 충분히 결정할 정도의 수량을 가진 원고에게는 소집통지조차 하지 않았고(소집절차상의 하자)

②따라서, 원고는 그 각 주주총회에서 51%의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반면, 위 2부분 언급과 같이 당시 ***는 3,000주만 행사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3,000주까지 포함하여 6,000주의 의결권을 행사하고, 나머지 ***의 7,200를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***, ***도 원고의 의결권인 그 7,200주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되어, 단순히 원고의 의결권을 배제한 것에 그치지 않고, 오히려 원고의 의결권까지 무단으로 대행 행사한 셈이 되어 버리므로(결의방법상의 하자),

그 2016. 1. 19.경, 2. 15.경, 3. 30.경의 주주총회에서 행해진 이사선임, 이사해임, 정관변경 및 감사선임 결의는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상 하자의 정도가 주주총회가 존

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정도¹입니다.

아래 판례를 볼 때에도, 주주명부상 주주라도 실제로 주주가 아닌 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,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 위법하다고 보고 있는 바, 위와 같이 원고가 10,200주를 취득한 것은 그 소송자체에서 피고회사도 상대방이었고, 또한 법원 결정과 판결로 이미 피고회사에 송달되어 회사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, 피고회사는 위 각 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소집통지도 하지 않았고, 따라서 원고는 당연히 의결권행사에서 배제되었으며, 오히려 ***와, ***로부터 7,200주의 주식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***, ***이 원고의 의결권까지 대신 행사한 것이므로,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.

더구나, 최근 원고는 ***** 2016타기30005호 간접강제사건으로 위 10,200주의 주주명부 기재를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받기도 하여, 이미 10,200주 보유의 적법성을 법원으로 부터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.

- 갑 제11호증 ***** 2016타기30005호 간접강제결정문

¹ 상법 제 380 조(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 의 소)

제 186 조 내지 제 188 조, 제 190 조 본문, 제 191 조, 제 377 조와 제 378 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.

[대법원 96다45818]

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그 주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, 그 주주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이른바 형식주주에 불과하여도 그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지만, 주식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또한 이를 용이하게 증명하여 의결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의결권 행사를 용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의결권 행사는 위법하게 된다.

(3) 따라서, 원고는 그러한 하자있는 각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선임, 이사해임,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의 각 부존재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.

4. 이사자격없는 자들에 의한 신주발행의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

(1) 그리고, 피고회사는 2016. 3. 31. 경 유상증자를 통하여 총 주식을 400,000주로 증가시켰으나, 그 또한 유효한 유상증자가 아닙니다.

(2) 상술하면,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인 바, 신주발행 이사회결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2016. 3. 31. 경 회사의 이사는 2016. 1. 19. 경 주주총회에서 신규로 선임된 3인의 이사 ***, ***, ***와, 그전부터 있었던 이사 ***만 있었으므로 그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유상증자를 결정했을 것입니다.

그런데, 위 ‘가’부분 언급과 같이 위와 같이 ***, ***, ***이 이사로 선임된 2016.

1. 19. 경의 이사선임 주주총회는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상 하자의 정도가 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정도이고, 또한 2016. 2. 15. 경의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부당하게 해임되어 원고도 제외된 이사회이므로, 그렇게 위법하게 선임된 이사들이 참여하고, 또한 이사자격 있는 원고가 제외된 채로 개최된 2016. 3. 31.경 피고회사 이사의 유상증자결정은 이사회결의가 없는 유상증자결정이 되어 무효일 수 밖에 없 습니다.

(3) 따라서, 원고는 그러한 하자있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신주발행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.

5. 소결

위 언급과 같이,

(1) 원고는 피고회사의 10,200주(51%)를 가진 과반수 의결권 보유 주주임에도, 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없었고, 의결권 행사도 배제하였던 바, 따라서 원고는 그러한 주주총회들에서 결의된 이사선임결의, 이사해임결의, 정관 변경 및 감사선임결의의 각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고,

(2) 또한, 그러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참여하고, 위법하게 해임된 피고

가 제외된 이사회에서의 신주발행결의를 통하여 발행된 신주발행의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도 있다 할 것입니다.

IV. 결어

이상과 같이 청구하오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입 증 방 법

- 갑 제1호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갑 제2호증1 **** 2014타채1249 주식양도결정 1심 결정문
- 갑 제2호증2 수원지방법원 2014라1443 주식양도결정 항고심 결정문
- 갑 제2호증3 송달,확정증명원
- 갑 제2호증4 사건내역서
- 갑 제3호증1 ***** 2013가합2541 판결문
- 갑 제3호증2 ***** 2014나2037314 판결문
- 갑 제3호증3 송달증명원
- 갑 제3호증4 확정증명원
- 갑 제3호증5 사건내역서
- 갑 제4호증의1~4 각 부동산등기부등본
- 갑 제5호증 **** 2016가합5029 변제자대위금 판결문
- 갑 제6호증 2014. 8. 경 주주명부
- 갑 제7호증 2014회계년도 감사보고서
- 갑 제8호증 2015회계년도 감사보고서
- 갑 제9호증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치분결정문
- 갑 제10호증 주주대표소송 사건내역서

- 갑 제11호증 **** 2016타기30005호 간접강제결정문

첨부서류

- 위 입증방법 각 1 부
-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1 부

2016. 6.

원고 소송대리인

법무법인 한 백

담당변호사 이 진 화

춘천지방법원 ** 귀중**

별지1

대상 주주총회

피고 주식회사 *****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. 1. 19. 자 각 사내이사로 취임
하여 같은 해 1. 20. 각 등기된 ***, ***, ***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포함한 피
고의 주주총회

별지2

대상 주주총회

피고 주식회사 *****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. 2. 15. 자로 해임되어 같은 해 2. 19. 등기된 원고 ***를 해임하는 안건을 포함한 피고의 주주총회

대상 주주총회

피고 주식회사 *****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. 3. 30. 감사로 취임하여 같은 해 4. 5. 등기된 ***에 대한 감사선임결의안건 및 2016. 3. 30. 자로 변경되어 같은 해 4. 5. 등기된 위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,600,000주로 변경한 정관변경결의안건이 포함된 피고의 주주총회

별지4

대상 신주

피고 주식회사 *****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6. 3. 31. 자로 변경되어 같은 해

4. 5. 등기된 회사의 신규발행 보통주 380,000주